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8월 16일
- 회부일자 : 2019년 8월 21일

3. 제안사유

- 강원도 산불피해 등 타 시·도의 재해 발생 시,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(재해구호기금)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에 타 시·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올해 4월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피해와 유사한 타 시·도의 재해 발생 시,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(재해구호기금 포함)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3조(기금의 용도) 제1호의 ‘재해구호사업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조례 현행	조례 개정안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<b>1. 재해구호사업</b>	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  <b>1. 재해구호사업</b> <b>가.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</b> <b>나. 타 시·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</b>

- 현행 조례에 따른 재해구호사업은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8조에 규정된 사업으로, 지역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사업의 실질적 지원 범위는 해당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타 시· 시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, 지역 기금을 사용해 타 시· 도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.

※ 현재 경북, 대구, 충남은 조례에 타 시도 재해구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시도	내 용 (재해구호기금 관련 조례)
대구	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<b>5.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</b>
경북	제4조(기금의 용도) ② 재해구호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<b>타시도 재해 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</b> 할 수 있다.
충남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b>3. 타 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</b>

- 따라서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시·도 재해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, 강원도 산불피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,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<참고> 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[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]

- 임시주거시설의 제공
- 장사(葬事)의 지원
- 심리회복의 지원
-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·운영
- 응급구호
-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
-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
-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
- 재해구호물자의 조달·운송
-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·훈련 및 급식
- 그 밖에 사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요비용

- 안 제7조제2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, 기금관리공무원(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) 규정을 담당 업무 기준으로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- (현행) 보건복지국장 → (개정) 복지 업무담당 국장
  - (현행) 복지기획담당사무관 → (개정) 복지 업무담당 사무관

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강원도 산불피해와 유사한 타 시·도의 재해발생 시 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,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절차상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함.